

채용 결격사유 및 가족채용 제한 관련 체크리스트

구 분	세부내용	해당여부 (O/X)
인사관리 규정 결격사유 해당 여부	·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	
	·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	
	·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,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	
	·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	
	·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	
	·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	
	·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	
	·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·해임 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.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 대상 성범죄	
	· 국가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날 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	
	· 국가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날 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	
	· 병역법에 의한 병역을 기피한 자	
	· 채용신체검사결과 채용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정된 자	
	·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	
	·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	
가족 채용제한 여부 확인	· 「형법」 제303조 또는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	
	· 비위 채용자로 적발된 날로부터 5년 이상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	
가족 채용제한 여부 확인	· 채용대상자의 가족 중 채용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또는 채용업무를 담당하는 공직자 존재 여부	
	· 채용대상자의 가족 중 채용기관이 산하 공공기관인 경우 그 기관의 감독기관 소속의 고위공직자가 존재 여부	

위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. 또한 해당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될 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.

2025 . . .

지 원 자 : (인)

경기도농수산물진흥원장 귀하